

대구지방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3가단147724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30.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1,334,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9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C,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8. 3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)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20. 3. 12.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, 2023. 7. 7. 피고와 그간의 변제금 등을 감안하여 대여금을 1억 1,3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이에 대하여 이자 연 12%, 변제기 2023. 8. 30.로 약정하였으며(이하 '이 사건 대여'라 한다), C과 D 주식회사가 피고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,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1,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8. 31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2023. 9. 8.자 1,400만 원

피고는 2023. 9. 8. 원고에게 1,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,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3. 9. 8. 피고에게 1,40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이를 1억 1,300만 원에 대한 2023. 7. 8.부터 2023. 9. 8.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,334,098원(= 1억 1,300만 원 × 63일/366일 × 12%, 원 미만 버림)에 총당하고 나머지 11,665,902원을 원금에 총당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101,334,098원(= 1억 1,300만 원 - 11,665,902원)이 남게 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,334,09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23. 9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나. 2023. 7. 6.자 100만 원과 쉼보레 승용차

피고는 2023. 7. 6. 100만 원을 변제하고 250만 원 상당의 쉼보레 승용차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대물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.

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. 7. 6. 원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2023. 7. 7. 그간의 대여금과 변제금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1억 1,300만 원으로 합의한 것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23. 7. 6. 송금한 1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원고가 250만 원

상당의 쉼보레 승용차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대물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정운

1) 원고와 C, 주식회사 D 사이에는 2024. 7. 12.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.